

동두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6-108
번 호	

제출년월일 : 2011. 8 .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1.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개정으로 개별화물운송사업자중 1.5톤 이하 차량 소유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2. 주요내용

- 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 개별화물운송사업자중 1.5톤 이하 차량 소유자를 포함(안 제3조 제3호)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1.5톤 이하 차량 소유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교통행정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교통행정과장 손 덕 환
	팀 장 직위·성명	교통행정팀장 박 성 환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권오진 229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u><신설></u> 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1. ----- 2. ----- ----- 3. “개별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4. -----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u><신설></u>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 ----- ----- 1. ----- 2. -----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중 1.5톤 이하 차량 소유자